

자기변호노트

작성 기간 :

사건 번호 :

작성자 :

<목차>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메모란

자기변호노트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

<안내사항>

- 자기변호노트는 당신이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함으로써 조사 과정을 좀더 잘 이해하고 기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전달해주시면 좋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검찰은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메모를 제지할 경우 그러한 사례를 아래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인권팀(연락처 기재 요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pipec@minbyun.or.kr)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1.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거나, 조만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경찰조사,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혼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기변호노트는 여러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과정에서 무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받으시는 여러분이 직접 적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자기변호노트’가 정말 도움이 되나요?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를 받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조서(수사관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받아적은 서류)’를 작성한 후 여기에 여러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명을 하기 전에 작성된 조서를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서류에 서명만 하고 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편해진다고 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조서에 서명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자기변호노트’에 쓰여져 있는 **사용설명서와 형사절차 안내 내용**을 세심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시면, 수사기관이 부당한 대우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상황을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은 당신에게 강압적인 말투나 모욕적 언사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 변호인의 변호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변호인과 접견할 때 조사상황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고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재판의 자료가 됩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수사과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될 경우 ‘자기변호노트’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경위를 밝혀내기 쉬워집니다.

○ 여러분 스스로 권리를 자각하고 수사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진술거부권과 조서변경요구권과 같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인식할 수 있고 수사과정을 극복해내기 위한 마음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기변호노트’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 항목에 구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변호노트’에는 나중에 재판을 대비해서 필요한 내용이 미리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대답하는 기분으로 있는 그대로를 작성해 주세요.

잘 모를 때에는 변호인에게 물어봐 주세요. 어느 항목에 무엇을 쓰면 좋을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에 구매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에 조사내용과 당시 상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실제로 조사받은 내용을 그대로 써 주십시오.

‘자기변호노트’에는 여러분이 받은 실제 조사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해 주세요. 절대로 과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현장에서 작성해 주십시오.

조사를 받는 도중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기억이 선명할 때 가능한 신속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변호인과 접견할 때에 가지고 와서 변호인에게 보여주면서 조사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변호인의 변호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유롭게 메모하세요

※ 이곳에 수사 내용을 편하게 메모하세요. 이곳에 메모한 내용을 기초로 자기변호 노트를 작성해주세요.

자기변호노트

1. 조사일

년 월 일

- ① 조사의 장소 ☐ 경찰서 (경찰서 과) ☐ 검찰청()
- ② 수사관 또는 검사의 성명 ()
- ③ 조사 날짜를 정할 때 당신의 사정과 의견이 고려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④ 조서에는 조사의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합니다. 조사의 개시와 종료시간은 사실대로 기재되었습니까?
- ☐ 예 ☐ 아니오

2. 조사와 관련하여

- ① 조사를 시작할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습니까?
- ☐ 예 ☐ 아니오 ☐ 기억나지 않음
- ②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을 신문조서에 기재했습니까?
- ☐ 예 ☐ 아니오 ☐ 기억나지 않음
- ③ 조사시 영상녹화를 하였습니까? ☐ 하였음 ☐ 하지 않았음
- ③-1 영상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이루어졌습니까?
- ☐ 예 ☐ 아니오 (녹화하지 않은 부분:)
- ③-2 녹화한 영상물은 재생시청을 하였습니까?
- ☐ 예 ☐ 시청을 요청하지 않음 ☐ 시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받는 내용에 대한 메모가 허용되었습니까?
- ☐ 예 ☐ 아니오 (이유 :)
- ⑤ 조사과정에서 쉬고 싶을 때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까?
- ☐ 예 ☐ 아니오 (이유 :)
- ⑥ 조사 전 또는 휴식시간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관과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⑦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습니까?

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③-2 조서의 내용이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까?

☐ 요청하지 않음 ☐ 요청하여 정정함 ☐ 요청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음

④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거부했음)

6. 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① 당신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질문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② 장애로 인해 혼자서 조사를 받기가 힘들다면 가까운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도록 해 달라고 하거나 편의제공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수사관이 당신이 요청한대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까? ☐ 예 ☐ 아니오

④ 만약, 당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7. 외국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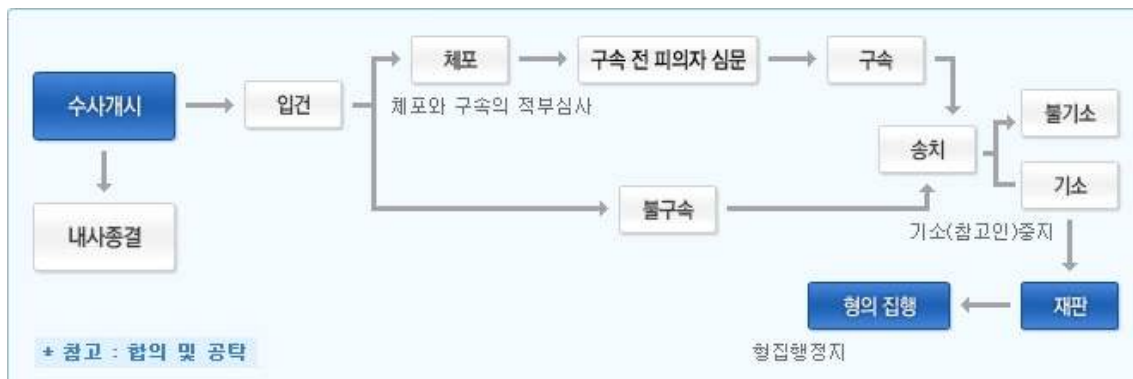
① 수사기관으로부터 한국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개요 등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② 피의자가 외국인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에 따라 수사기관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형사절차 안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

○ 수사의 절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검찰단계에서 죄가 없음이 인정될 경우 불기소처분,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겠지요.

아래에서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인정되는 법적 권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 수반되어 경솔하거나 착오에 의한 답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어설픈게 대응했다가는 피의자가 범죄를 뒤집어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을 때, 가능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입니다. 혐의자체가 불분명할 때 일단 자백을 받아내면 수사를 압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추가 증거도 얻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률적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이 없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법적인 방법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 조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의 신문사항에 맞춰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수사관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진술한 내용과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조서에 잘못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할 수 있고,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서에 대하여는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문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 수사관의 반말과 폭언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계속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야조사

밤12시가 넘었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 **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 신뢰관계인 등의 동석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가족 등의 참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이 허용됩니다(인권보호수사준칙 제37조).

☞ 통역 제공, 법률구조 안내

농아자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고,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줍니다(인권보호수사준칙 제55조).